연인원 12만명 투입하고도 번번이 '뒷북'…검·경 초라한 수사력

❶ 5월17일 구원파 본산인 안성 금수원 내에 머무름.
19일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직후 예배에 참석한 많은 신도들 틈에 섞여 금수원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

❷ 5월19일 이후 관련자 통신내역 확인 결과 금수원 인근 '비밀별장'에 머무름

❸ 5월21일 전후 서울 일대 구원파 신도 집 등에서 은신 추정

❹ 5월23일 전후 순천 송치재 휴게소 부근서 은신 확인
25일 새벽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잠시 머무르다 신도 연락받고 도피. (유 전 회장과 함께 다니던 운전기사 양씨, 이때부터 따로 움직임)

6월12일 경찰,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 한 구가 있다는 밭 주인 박모씨의 신고를 받고 시신 수습.

❺ 6월30일 검경, 유씨 순천 및 해남, 목포 일대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

7월22일 경찰, 지난달 12일 수습한 시신의 DNA와 지문 검사 결과 유병언 회장으로 확인. 40일간 현장에 시신 일부와 증거물 방치.

/연합뉴스

금수원·순천 별장 뒤늦은 수색…검문검색도 허술

정보력 부재·보여주기식 수사 일관…수사력만 낭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달 이미 변사체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경의 '초라한' 수사·정보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씨의 변사체 발견을 계기로 들여다본 검·경 유씨 검거 작전은 정보도,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뒷북 수색'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검·경간 미흡한 공조와 '(병력을) 투입하고 보자'는 식의 경찰의 '보여주기식' 수색으로 유씨 추적에 실패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검찰은 우선, 두 차례의 금수원 압수수색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허술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유씨 검거를 내걸고 금수원에 처음 진입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당시 경찰은 15개 중대 1300여명의 기동대원을 동원해 정문과 주요 진입로에 배치했었다. 이미 빠져나간 뒤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정보력 부재와 안일한 상황 인식으로 빚어진 일이었다.

지난달 12일 이뤄진 두번째 금수원 압수수색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검찰 수사팀과 경찰 병력 40개 중대 3600여명이라는 인력 투입에도 불구, 핵심 조력자 검거에는 실패해 허술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유씨가 순천으로 내려간 정황을 확보, 송치재 휴게소로 수사팀을 급파할 때도 공명심과 관행을 앞세운 '단독 플레이'로 유씨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검찰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협조를 받아 지난 5월 24일 수사관을 보냈지만 불과 500m 떨어진, 정작 유씨가 머물렀던 별장 '숲속의 추억'수색은 하지도 않고 돌아갔다가 뒤늦게 다시 현장에 가는 안일함을 보였다.

또 순천에서 도주한 유씨가 6월 첫째주 주말을 이용해 1시간 반 거리인 인근의 해남 내지 목포 방향으로 다시 달아난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도 비슷하다. 지난 5월 22일 이후 연인원 12만1000명을 투입,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 구원파 신도 자택 등을 중심으로 유씨 소재를 찾아나섰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바로 앞'의 변사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급기야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수배자를 잡기 위해 전남청(223명)을 비롯, 전국 경찰서마다 검거 전담 조직을 두며 체포 작전에 나서는 등 수사력 낭비를 불러왔다.

이 때문에 검·경 안팎에서는 유씨의 도주극은 막을 내렸지만 검·경의 부실한 수사력에 대한 책임론은 이제 시작됐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22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유 전 회장 추정 변사체와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이 사진으로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이 뼛조각 가져가도 '나 몰라라'

경찰, 증거물 40일 방치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머리카락과 뼈 등 증거물을 40일간 현장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순천시 서면 신촌마을 매실 밭에는 흰 머리카락 한 움큼과 피부·뼈 조각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난달 12일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백골상태였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검사 결과 유씨의 형 병일(75)씨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 유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현장 보존을 위한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그러나 증거물은 여전히 수거하지 않았다.

특히 유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인물을 지난 5월 말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한 주민이 이날 현장에서 뼛조각을 가져가는 모습이 목격됐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제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을 유병언씨일 것으로 추정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까지 의뢰하면서도 정작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현장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달아난 유씨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뒷북 압수수색, 검·경 간 부실 공조 등으로 수차례 허탕을 친 데 이어, 유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허술한 수사 행태를 보여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이종행기자 golee@

경찰 자의적 판단해 무연고자로 방치

유씨 유품 발견됐는데도 연관 못지어

신원 확인 왜 40일 걸렸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지 40일 만에 신원이 확인된 데는 경찰의 안일한 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다. 치밀한 과학수사 및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변사체 발견 이후 3~4일 만에 유씨 신병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 이후 다음날 머리카락과 대퇴부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분석 과정에서 두 샘플 중 대퇴부뼈의 유전자 정보가 유씨의 DNA와 일치했고 형 병일씨와 같은 부모를 가진 사실도 확인,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이 지난달 13일 의뢰한 이후 39일만에 나온 것이다.

만약 경찰이 국과수에 '긴급' 분석 요청을 했다면 1주일 전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고 수사력 낭비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지난 2013년 나주 금은방 절도 사건의 경우 긴급 분석을 의뢰, 하루만에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경찰이 사건을 고민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변사체 발견 현장에서 유씨 측근이 대표인 ㈜한국제약의 'ASA 스쿠알렌' 빈병과 유씨의 책 제목이 안쪽에 새겨진 가방 등이 발견됐는데도, 출동한 경찰이 유씨와의 관련성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일처리의 결과라는 지적도 많다. 더욱이 그토록 자랑했던 첨단 수사기법에도 불구, 지문 감식의 허술함도 드러냈다.

순천 경찰은 변사체 발견 이후 변사체의 손가락에서 지문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었다. 하지만 22일 새벽 유병언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에 변사체의 지문복원을 재차 시도해 1시간여 만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에서 지문의 융선을 복원, 유 전 회장과 일치함을 밝혀냈다. 경찰의 안일함과 허술함은 10만명이 넘는 인력 투입에 사상 처음 민간인 체포를 위한 군병력 투입, 반상회 실시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사망 상태서 발견…전액 지급 어려워

최초 신고자 5억 받나

검·경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내건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놓고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박모(77)씨는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신촌마을 자신의 매실 밭에서 일하던 중 누군가의 시신을 발견한 뒤 순천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을 무연고자로 판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 지난 21일 유 전 회장의 시신임을 확인한 뒤 22일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5일 유 전 회장과 아들 대균(44)씨에 대한 현상금을 각각 5000만 원과 1000만 원에서 5억 원과 1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하지만 검·경은 시신이 유 전 회장으로 밝혀지자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우선 검·경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인천지검은 경찰청에, 경찰청은 전남지방경찰청에, 전남지방경찰청은 순천경찰에 확인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수배 관서 또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 등이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 검거 공로 및 범인(수배범)인지 여부 등을 따져 지급한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이들 경찰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 그러나 검·경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

일각에선 박씨가 신고 당시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다,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된 점 등을 감안해 전액 지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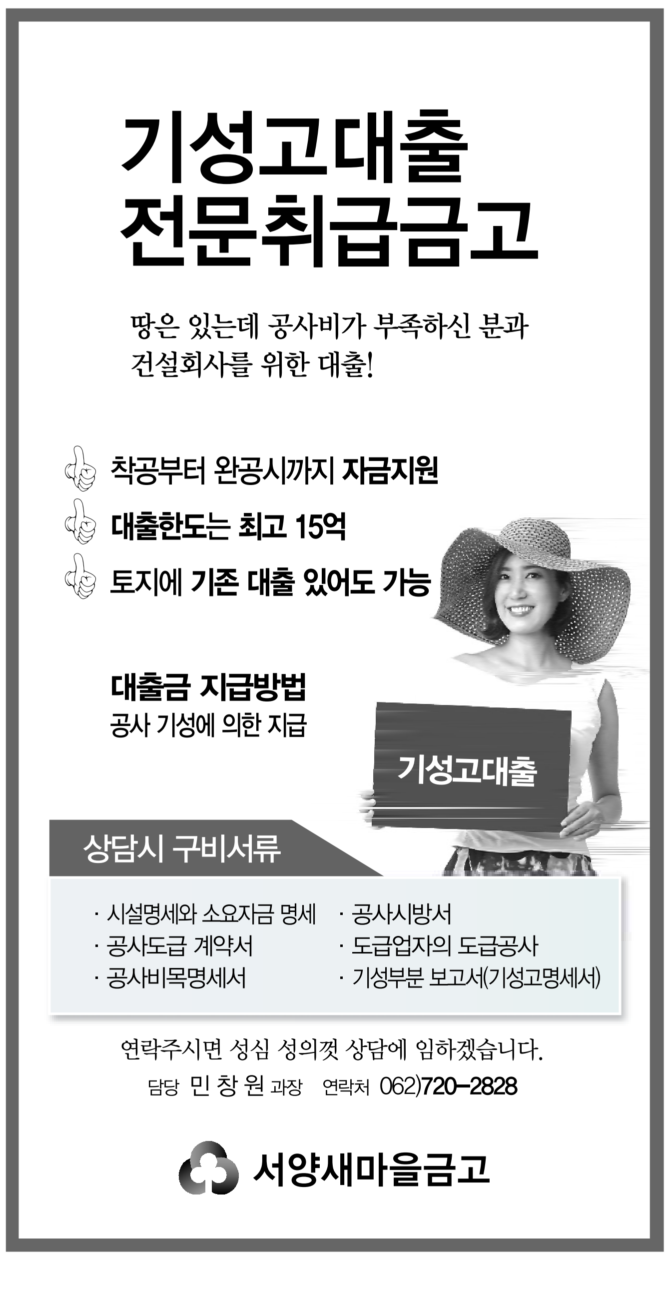
/순천=이종행기자 golee@